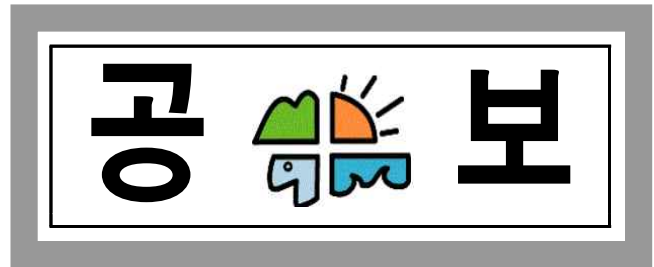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02호 2022년 8월 5일(금)

훈 령

- 속초시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2

공 고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조양동 1490-326) 4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도문동 1493-3) 6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8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도문동 1624-38) 14
- 속초시 시금고 협력사업비 공고 16

입법예고

-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속초시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8월 5 일

속 초 시 장 이 병 선 인

속초시 훈령 제 771 호

속초시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속초시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증명”을 “제증명, 사회복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대상기관 및 범위) 특 수직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급대상기관 및 범위)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동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가족관계, <u>제증명</u> 민원창구에 서 상시로 근무하며 민원관계 서류를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	3 ----- <u>제증명</u> , <u>사회복지</u> -----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2. 08. 05.~ 08. 19.(14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허가(신고)번호 (건축허가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속초시 조양동	1490-326	대	162	7.7	윤혜○	조양동 1490-326번지 단독주택 2022-건축과-신축허가-41 (2022.07.29.)	건축주: 윤혜○

5. 공고방법 :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문의사항 : 속초시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457)

위치도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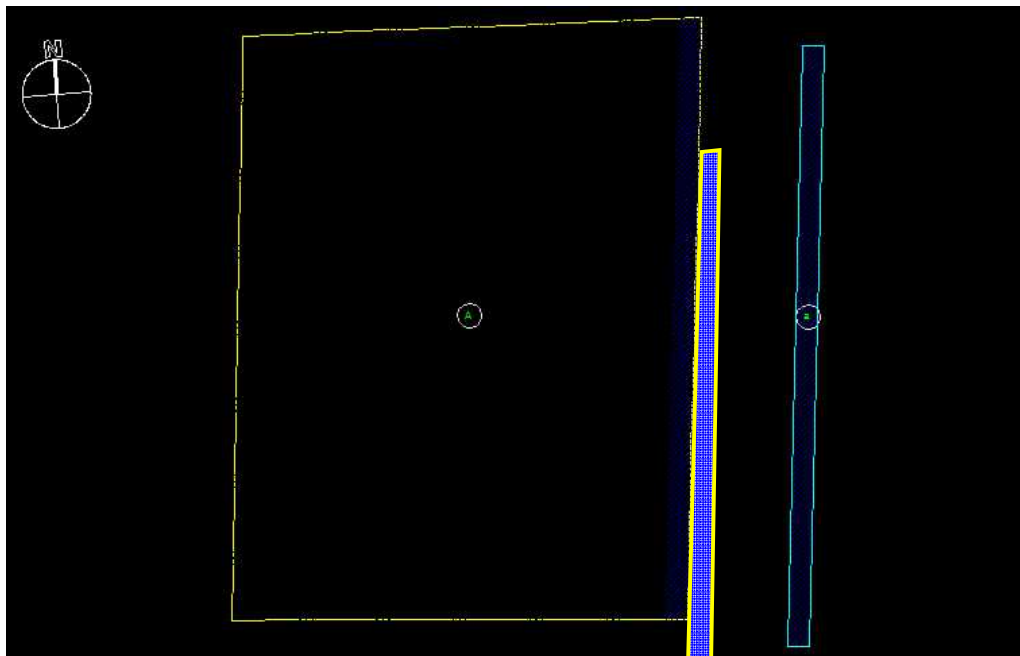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NONE



현황도

축척

NONE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속 초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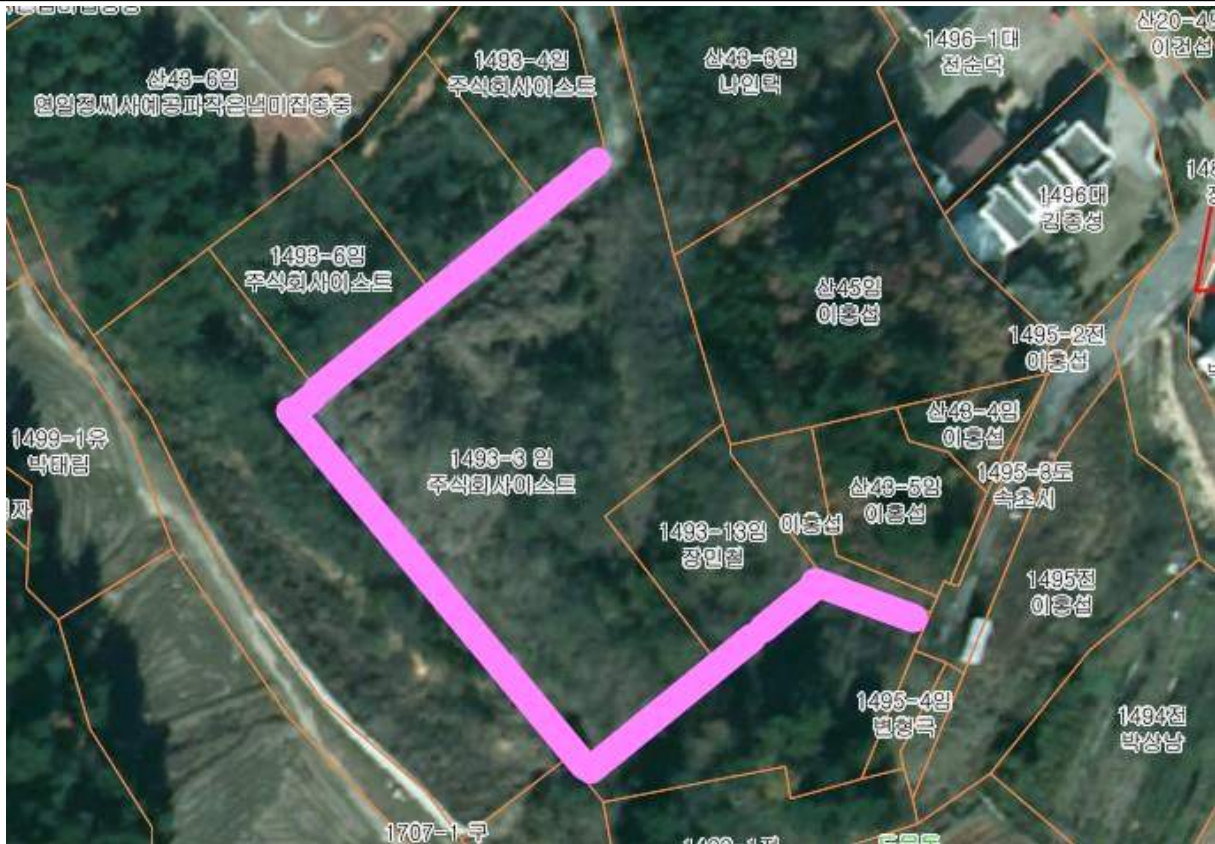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2. 08. 05.~ 08. 19.(14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허가(신고)번호 (건축허가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속초시 도문동	1493-3	대	7,818	1,156	(주)이스트	도문동 1493-4번지 단독주택 2022-건축과-신축허가-39 (2022.06.30.)	

5. 공고방법 :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문의사항 : 속초시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769)

위치도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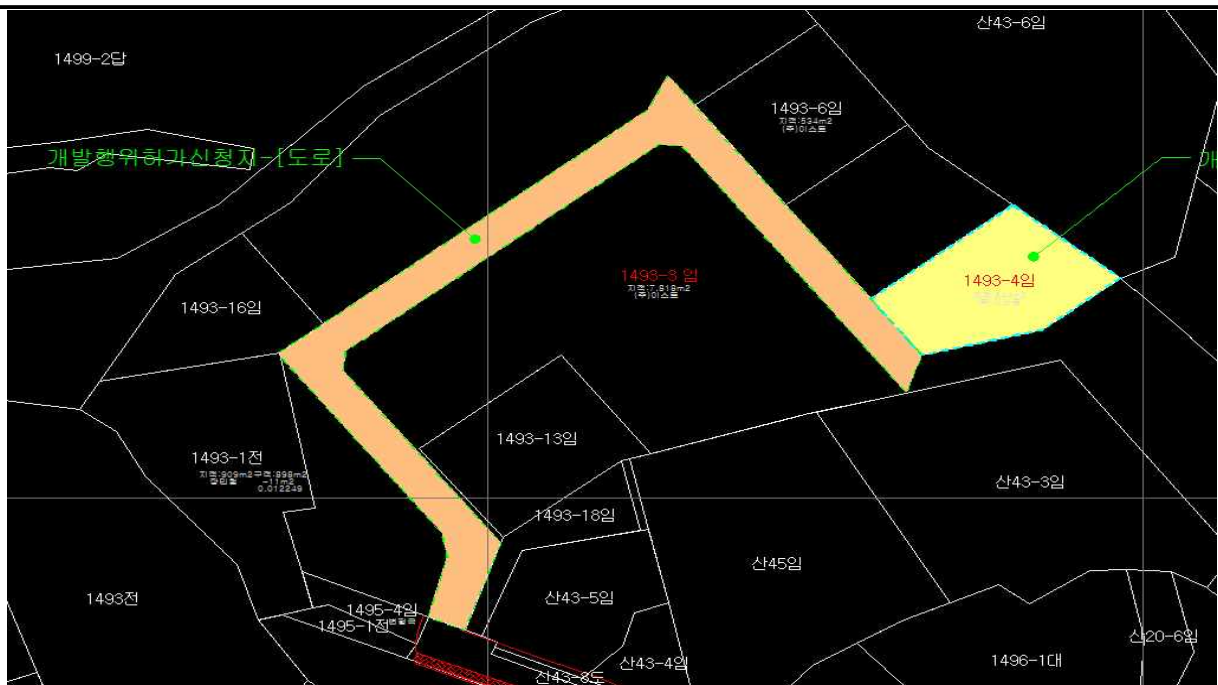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NONE



현황도

축 척

NONE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일

속 초 시 장

1. 행정예고 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에 따른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충전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단속기준 및 신고 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첨부된 사진 및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 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 나.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충전 방해행위)
-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3. 행정예고 기간 : 2022. 8. 2. ~ 8. 21.(20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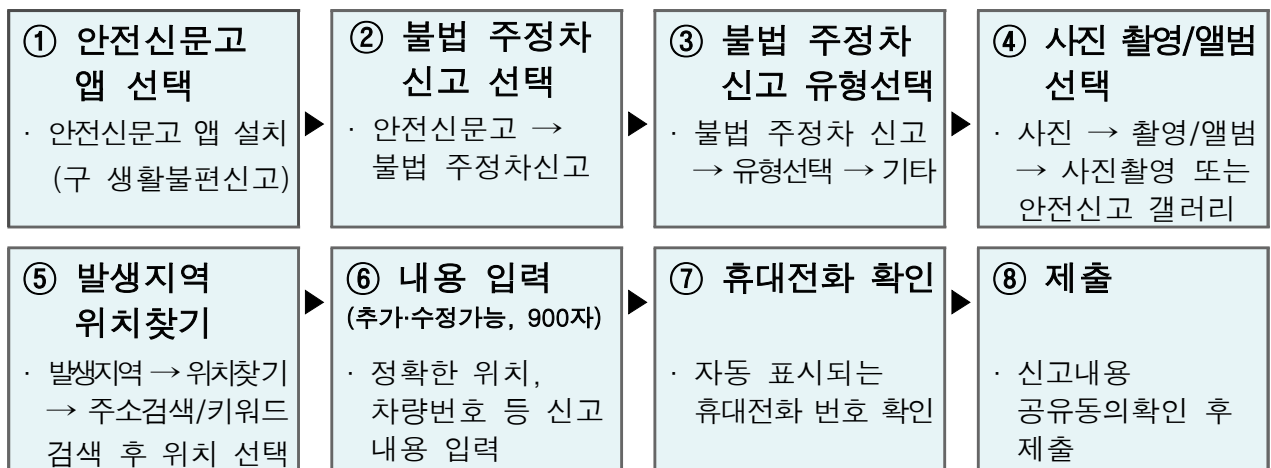
4. 행정예고 방법 : 속초시 홈페이지(<https://www.sokcho.go.kr>) → 정보 공개 → 속초소식 → 고시/공고

5. 행정예고 내용 : 주민신고제 운영

가. 시 행 일 : 2022. 8. 22.(월)

나. 신고대상 : 관내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차량

다.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라. 신고(접수)요건 : 사진 또는 영상자료 첨부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위반은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영상 등

- 급속충전구역 내 전기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PHEV) 충전 방해행위는 1시간 초과*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영상 등

***사진의 경우 촬영 간격 도중에 이동주차의 가능성이 있어 60분 초과 90분 미만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인정**

- 완속충전구역 내 전기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PHEV) 충전 방해행위는 14시간 초과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영상 등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충전구역 안내표지, 충전시설 등 단속대상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사진 또는 영상에 포함되어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 위반행위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마. 처리불가 신고사항

- 위반한 해당차량을 동일 장소에서 중복 신고한 경우 1건만 인정
- 1건 신고에 차량번호가 다른 2대 이상을 동시 신고하는 경우
 - ※ 2대 이상 신고 시, 1대씩 각각 신고하여야 함
- 차량번호 및 위반장소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증빙사진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 아파트 주차 구역 내 주차 분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보복적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마찰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자별 1일 3건까지만 인정

바. 과태료 부과 : 신고요건 구비 시,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사.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금액

구분	단속 대상	근 거	과태료
주차 위반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	10만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	10만원
충전 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1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2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3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6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단속 예외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제2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7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8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4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2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5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20만원

아. 단속 예외시설 운영

1) 운영 근거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2) 운영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입주자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아파트

①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의 과태료 미부과

②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2호나목의 과태료 미부과

6.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2. 8. 12.(금)까지

다. 제출방법 : 속초시 환경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마. 제 출 처

－ 우 편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T/F팀

－ 팩 스 : 033-639-2386

바. 문 의 처: 속초시 환경과 기후변화대응T/F팀(☎033-639-2149)

사. 제출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불 입 】

의 건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수립·시행 예정된 정책, 제도 및 계획의 제목	
	의 건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제1항을 준용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2. 08. 05.~ 08. 19.(14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비고
			공부	지정			
속초시 도문동	1624-38	전	60	60	김영옥	도문동 1628-1번지 단독주택	

5. 공고방법 :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문의사항 : 속초시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769)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NONE

속초시 시금고 협력사업비 공고

금고 협력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집행을 위하여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0조(협력 사업비의 공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협력사업비 연도별 납입 금액

연 도	금 액	납 입 기 한
합 계	120,000,000원	매년 2월의 마지막 날
2023년	30,000,000원	
2024년	30,000,000원	
2025년	30,000,000원	
2026년	30,000,000원	

2022년 8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해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수탁기관의 운영관리 지속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 역량을 축적 시켜 효율적 관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삭제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전화 033-639-2523, 팩스 033-639-2465, 전자문서 ehddnr525@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3-639-252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관리 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리 및 운영) ①·② (생략)	제5조(관리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탁관리 기간은 <u>3년</u> 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u>5년 이내</u>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붙임 2)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